

■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름

※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과 다른 경우, 해당법령 등이 우선함

①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)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'분교'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※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'본교'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, 고등교육법 상의 '분교' 등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 또는 대학알리미 사이트 상의 학교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분교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하시거나, 채용홈페이지 Q&A게시판을 통해 문의
 - * 분교운영 학교(예시) : 건국대 충주, 고려대 세종, 동국대 경주, 연세대 원주 등
 - * 분교가 아닌 경우(예시) : 단국대 천안, 상명대 천안, 홍익대 세종 등
-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①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③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④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③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③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